

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96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7월 4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변경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함(안 제3조제1항).

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중 “5년” 을 “3년” 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8. (생 략)</p>	<p>제3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도시형 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</p> <p>9.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p> <p>10.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 인정,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p> <p>11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	<p>제3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 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3년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9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0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1.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5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
9.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10.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,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
제1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·관리

제12조제2항제1호 중 “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·상담”을 “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·상담 및 조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도시형소공인에 관한”을 “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, 전자결제 시스템, 스마트·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·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7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8. (생략)</p> <p>제11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)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2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생략)</p> <p>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<u>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·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·3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. <u>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의 알선</u></p>	<p>제3조(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8. <u>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9. <u>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0. <u>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,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1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제11조(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) ①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5. <u>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·관리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. <u>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·상담 및 조사</u>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. <u>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</u> -----</p>

5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4조(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) ①·

②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③ (생략)

5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) ①·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이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, 전자결제 시스템, 스마트·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·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(현행 제3항과 같음)